

가칭 「함안복합문화관」 내 실재한자문화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

함안군과 사단법인 동방한학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)은 상호 협력관계를 확립하고, 원활한 실재한자문화관(이하 “문화관”)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문학과 한자문화가 어우러진 군민중심의 공간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관 조성 및 운영에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원칙) 함안군과 연구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통해 문화관을 원활하게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공동 노력한다.

제3조(협약사항) 함안군과 연구원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약한다.

- ① 함안군은 지역주민이 한자문화 습득을 통하여 청렴과 올바른 선비정신을 계승하도록 문화관 조성 및 운영에 노력한다.
- ② 함안군은 강의실과 전시실 등을 포함하여 문화관의 시설구성에 대해 연구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며, 문화관 명칭은 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연구원은 허권수 교수께서 수집·연구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선현의 친필 서신, 문집 등 7만여 권을 함안군에 무상기증하는데 협력하며 후학 양성에 적극 협조한다.
- ④ 연구원은 문화관 준공 후 각종 기획행사와 한자문화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시, 함안군에 적극 협력한다.

⑤ 함안군과 연구원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.

⑥ 기증 도서는 판매·양도·매각할 수 없으며,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이나 시설의 폐쇄 시는 기증단체나 후손에게 전부 반환한다.

제4조(실무협약) 제3조 협약내용의 세부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, 함안군과 연구원은 실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유지) 함안군과 연구원은 사업 추진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.

제6조(효력 및 변경·갱신) ① 본 협약은 당사자 간의 대표가 합의서 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 조정·결정한다.

③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.

제7조(협약준수) 대표자는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8 월 26 일



함안군수 조 근 제

동방한학연구원

이사장 정 옥 영